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6호로 2022년 11월 10일 이성수 의원·최봉희 의원 외 3명
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재범률을 낮추고 자립과 사회정착을 지원
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보호선도 사업의
육성 책임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사회정착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5조)
- 다.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2022. 11. 8.~ 11. 15)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이고 8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2조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 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소만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의 사무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으며,
- 서울시에서는 11개 자치구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78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 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저 <생략>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